

농어촌지역 개발기금법 공포

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84호로 농어촌지역 개발기금법이 공포되었다.

이법은 농어촌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농어촌의 공업육성 편익시설 및 복지기반의 확충과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 등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는 기금을 설치 운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수입부과금 및 기타 재원으로 충당되는데 법 제5조에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농축수산물 또는 그 혼합조제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그 수입액의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금을 부과한다. 단 정부가 농수산물의 수급상황 기타 국

민경제의 운용상 수입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수입농산물에 대하여는 수입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수입되는 모든 농축산물에 대하여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예외 규정으로 부과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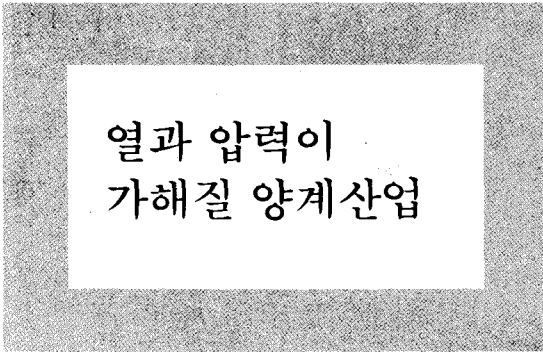
기금의 사용은 농지구입의 지원, 농공지구의 조성,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지원, 농어촌의 복지·문화시설 설치의 지원, 농어촌의 보건 및 의료기반의 확충, 어선대체 및 수산증양식사업, 농어촌의 관광지개발,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 기타 농어촌지역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EC 등에서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부과금을 부과하고 이 기금으로 국내 농축산업에 투자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간 것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드린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령이 어떻게 공포될지는 알 수 없으나 7월 1일부터 개방될 가공축산물에 부과금이 부과될 것은 당연하겠지만 양축가들이 걱정한대로 짧은 기일내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급함으로 수입사료곡물에 부과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특히 이 기금이 수입가공축산물 등에도 부과될

때 농어촌의 문화시설이나 농공지역 관광개발도 중요하지만 수입되는 축산물로 영향을 받는 국내 양축생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각종 기금에 대한 양축가의 반응이 좋은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열과 압력이 가해질 양계산업

새해에 들어서면서 축산 식품관계 신문 잡지들이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압력을 크게 다루고 있다.

정부도 대미 무역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개방해 나갈 것을 시사하고 있어 직접 영향을 받는 생산자들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큰 파고 없이 순풍에 돛단배처럼 달려간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가끔 주기적으로 오는 파동이 문제이며 이번 수입개방은 태풍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폭풍에는 틀림없다.

우리가 그간 경험한 바로는 강풍을 그리 겁낼 것은 없다. 배가 전복되지만 않는다면 순풍보다는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고 항해술도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지금 규모가 큰 양축가들이 대개는 적고 큰 풍파를 잘 이용한 항해술(경영)을 가진 사람들이다.

본래 석탄이나 다이어몬드는 그 성분이 똑같은



탄소인데 열과 압력이 가해진 것이 다이어몬드라고 배운 기억이 난다. 석탄과 다이어몬드는 같은 탄소이지만 가격이 비교도 되지 않으며 용도가 다르도록 가치가 변해진다.

이번 양계산업에 가해질 열과 압력에 견디면 우리는 그만큼 가치가 더 높아지는 다이어몬드와 같이 강해질 수 있다. 각종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들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항상 긴장과 강한 내·외부의 압력을 받음으로써 생산효율이 높아지고 국제 경쟁력이 향상된다.

소비자의 상품고급화 압력과 외국의 수입개방 압력을 업계발전의 계기로 삼자. 계열화가 촉진되고 기술과 경영의 새로운 혁신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발전이고 다이어몬드처럼 업계는 견고해진다.



사료수급

금년도 사료수급 기본목표도 사료원료도입 억제 및 절감이 주종으로 되어 있다.

지난해에도 사료곡물도입을 억제하기 위한 무리한 쿼터제 실시가 양축농가에 부당한 피해를 주었기에 축산 생산자 단체에서 이 문제의 시정을 위해 현재 노력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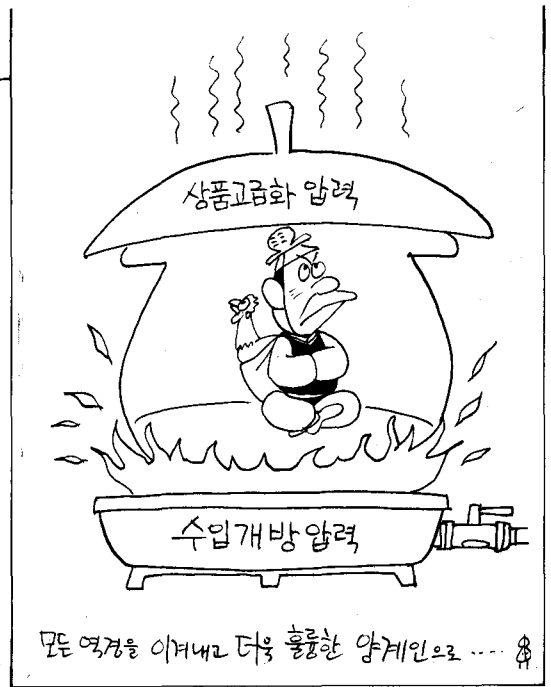
신문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87년도 수입사료곡물의 업체별 한도량을 생산실적 60%, 시설능력 40%로 정하고 시설능력은 85년도 기준으로 소급 적용키로 하였다고 한다.

또한 수입곡물 배정은 사료협회에 76% 축협에 24%로 배정해 지난해보다 축협에 1%를 증배하였다.

이러한 각종 제한조치가 양축가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는 것이 이미 학계의 연구 발표로 확인되었고 지난해의 쿼터제 실시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없이 금년도도 지난해와 같은 방법으로 정책을 수행해 나간다면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은 너무도 명확한 일이다.

이렇게 정부가 사료원료의 도입을 억제 절감하려는 명분으로 제시하는 것이 외화절감 및 국내부존자원의 활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이 양축가에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정부의 정책목표가 복지국가 건설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보건이 중요하고 잘먹어야 되는 것은 모든 정책에 우선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쇠고기, 고추, 마늘, 참깨, 땅콩까



지 수입해오지 않았는가?

양담배처럼 국민건강을 해치는 기호품까지 수입하고 과자류 각종 음료수의 원료가 수입개방되는 마당에 국민의 주식을 생산하는 사료원료의 도입을 제한하거나 물리적으로 절감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수 밖에 없다.

국내 부존자원의 활용문제도 국내에서 생산되어 사용될 수 있는 국산보리나 국산옥수수 등을 두고도 수입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량 수입가격보다 몇배 비싼 값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오히려 물량이 없어 정부의 당초 계획량을 정부가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이 아닌가?

금년에는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이 제정 시행되므로써 도입되는 각종 사료원료에 부과금 형태이거나 과거 한번 시행하여 운영상의 문제로 실패한적이 있는 사료가격 안정기금 등의 형태로 기금을 부가할 것을 정부가 계획하고 있다 하는 바, 후반기부터 닭고기 돼지고기의 가공품 수입개방 발표와 함께 양축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새해들어 계속 발표되어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양축가와의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일들이다.

사료회사에 대한 정부가 각종 경쟁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축가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것을 양축가는 바라지 않고 있다.